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나623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나62309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7072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변론종결 2022. 4. 13.

판결선고 2022. 5. 4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7. 8. 선고 2021가단70728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D와 2016. 5. 9. 피고 A 사이에 3,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, 피고 B 사이에 2,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, 피고 C 사이에 4,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
나. 원고에게, 피고 A은 3,000만 원, 피고 B은 2,000만 원, 피고 C는 4,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4쪽 제1행 “2015. 2. 11.”을 “2016. 2. 11.”로, 제7쪽 제10행 “2015. 5. 9.”을 “2016. 5. 9.”로 각 고침

○ 제7쪽 제1행 후문부터 제8행까지를 “같은 날 피고 C에게 2억 3,000만 원을 증여하고, 그 다음 날인 2015. 12. 29. T에게 5,000만 원, 차녀 U에게 6,000만 원을, 장녀 V에게 3,000만 원을, 3년 피고 B에게 3,000만 원을, 장남 피고 A에게 1,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, 피고 A은 아버지 E의 통장에 입금된 순천시 F 토지의 계약금 1억 원이 D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정산의 주장을 하나, E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(피고 A은 E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나 출금내역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)”으로 고침

2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신,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